

2019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9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8.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8. 10. 23.)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1.3조원, 총지출 470.5조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등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을 41.7조원(9.7%)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면한 사회적·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국가채무·재정수지·의무지출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대책 등 주요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 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각의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I. 현황 / 1

- 1. 성인지 예산의 의의 및 추진체계 1
- 2. 2019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 4
- 3.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특징 7

II. 총괄 분석 / 14

- 1. 성인지 대상사업 관련 개선방안 14
- 2. 부처별 성인지 분석결과 종합 21

III. 주요 부처별 분석 / 29

- 1. 교육부 29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
- 3. 외교부 39
- 4. 통일부 44
- 5. 법무부 48
- 6. 문화체육관광부 53
- 7. 농림축산식품부 59
- 8. 산업통상자원부 64



CONTENTS

9. 보건복지부	67
10. 고용노동부	74
11. 여성가족부	81
12. 국토교통부	86
13. 해양수산부	91
14. 중소벤처기업부	94
15. 경찰청	99
16. 농촌진흥청	103

1 성인지 예산의 의의 및 추진체계

가. 의의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¹⁾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²⁾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이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일환이다.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제26조³⁾와 제68조의2⁴⁾에 따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된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 1)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국가재정법」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법」⁵⁾은 성별영향분석평가⁶⁾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자금운용계획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추진체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8조의2 그리고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에 바탕을 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제 운영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 하에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각 기관으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센터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2015년부터는 기존의 하향식 통보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제시하되, 대상사업의 선정은 각 기관별로 능동적으로 발굴·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기관의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 상설협의체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협의·조정하여 국회에 예산안의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다.⁷⁾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과정에서 각 부처 및 관련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 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자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6)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7)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16.

[성인지 예·결산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기능]

기관	역할 및 기능
기획재정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결산서 취합·검토 성인지 예·결산서 국회 제출
여성가족부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교육 및 지원
해당부처	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감사원	성인지 결산서 검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해당 기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사업담당자 교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개요

2019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은 33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261개로 예산 전체 규모는 25조 6,283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특별회계 사업이 192개 사업, 13조 6,432억원이며, 기금사업이 69개 사업, 11조 9,851억원이다.

2018년과 비교할 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은 대상사업의 재구조화, 사업 종료 및 통합 등으로 중앙관서의 수는 41개에서 33개로, 전체 예산규모는 33조 8,472억원에서 25조 6,283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이 중 일반·특별회계 사업은 40.7% 감소(추경포함 기준 41.0%)한 반면 기금사업은 10.4% 증가(추경포함 기준 2.2%)하였다.

한편, 사업 수는 345개에서 261개로 84개(24.3%) 감소하였는데,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가 260개에서 192개로 68개 감소하였으며, 기금사업 수가 85개에서 69개로 16개 감소하였다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개, 억원, %)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 감	
				(B-A)	(B-A)/A
중앙관서 수		41 (41)	33	△8 (△8)	△19.5 (△19.5)
회 계	예 산	229,960 (231,138)	136,432	△93,528 (△94,706)	△40.7 (△41.0)
	사업 수	260 (260)	192	△68 (△68)	△26.2 (△26.2)
기 금	예 산	108,512 (117,297)	119,851	11,339 (2,554)	10.4 (2.2)
	사업 수	85 (85)	69	△16 (△16)	△18.8 (△18.8)
합 계	예 산	338,472 (348,435)	256,283	△82,189 (△92,152)	△24.3 (△26.4)
	사업 수	345 (345)	261	△84 (△84)	△24.3 (△24.3)

주: ()는 2018년 추경포함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8.9.

나. 부처별 현황

성인지 대상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36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여성가족부 33개, 보건복지부 30개, 중소벤처기업부 24개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국세청·대법원·법제처·병무청·통계청·해양경찰청·헌법재판소 등 9개 기관은 2018년에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있었으나, 2019년에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년에는 대상사업이 없었으나, 2019년에는 1개 사업, 70억 2,200만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사업이 포함되었다.

예산규모는 보건복지부가 7조 7,838억원으로 가장 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6조 3,024억원, 고용노동부 6조 2,109억원, 국토교통부 2조 8,604억원 순이다.

[부처별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기 관	2018		2019	
	대상사업	금액	대상사업	금액
경찰청	4	43,883	7	91,950
고용노동부	38	5,298,538	36	6,210,879
공정거래위원회	1	7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680,199	12	224,535
관세청	2	2,904	-	-
교육부	11	184,608	6	199,664
국가보훈처	4	69,128	3	47,268
국가인권위원회	2	205	2	246
국민권익위원회	2	13	1	11
국방부	4	27,123	4	27,714
국세청	1	35	-	-
국토교통부	15	2,893,016	12	2,860,371
국회	1	7,108	1	129
기상청	5	14,838	1	159
기획재정부	2	6,575	1	248
농림축산식품부	19	366,947	11	359,472
농촌진흥청	8	21,820	7	20,214

(단위: 개, 백만원)

기 관	2018		2019	
	대상사업	금액	대상사업	금액
대법원	1	59,524	-	-
문화재청	4	28,945	1	13,535
문화체육관광부	21	338,757	12	179,106
방송통신위원회	1	1,350	1	1,681
법무부	12	90,222	13	153,029
법제처	1	292	-	-
병무청	1	8,195	-	-
보건복지부	39	16,441,719	30	7,783,816
산림청	1	26,247	1	7,564
산업통상자원부	8	132,620	6	45,887
식품의약품안전처	4	57,113	1	43,899
여성가족부	39	600,497	33	757,836
외교부	12	178,709	8	185,368
조달청	1	1,171	1	1,394
중소벤처기업부	27	6,050,988	24	6,302,3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68	1	168
통계청	1	3,303	-	-
통일부	6	43,280	5	48,664
특허청	4	14,132	4	18,185
해양경찰청	1	1,750	-	-
해양수산부	13	77,767	8	18,340
행정안전부	5	34,784	3	1,05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1	7,022
헌법재판소	1	112	-	-
환경부	6	38,516	4	16,458
계	345	33,847,174	261	25,628,259

주: 1.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의 예산사업을 합한 현황임

2. 2018년도 현황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18. 9.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 있는 예산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업이 적절한 성별수혜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성과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이래로 대상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국회는 시정요구로 ‘정부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부처별로 철저히 분석·관리하고, 3년 이상의 성과목표치 달성현황을 성인지 결산서에 포함하며, 통합 재정사업평가제도 또는 성과관리제도에 성인지 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편, 성과목표 합리화 등의 개선 노력을 수행하였다.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편

(1) 개요

기존에는 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② 전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③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기 부적절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대상사업을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으로 분류하여 새로이 선정하였다.

직접목적 사업이란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이다. 간접목적 사업은 사업의 고유 목적이 있으며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업 수행의 결과가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간접목적사업에는 2018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과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이 포함된다.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비교]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1. 직접목적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2. 전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2. 간접목적사업 - '18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3.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7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 기타사업(자율선정)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자료: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18.

2019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을 직접목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업 수 기준으로 직접목적 사업이 89개, 간접목적 사업이 172개로 전체 성인지 대상사업 261개 중 직접목적 사업의 비율은 34.1%이다.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직접목적 사업이 9.1조원, 간접목적 사업이 16.6조원으로, 2019년도 성인지 예산사업 총 예산 25.7조원 대비 직접목적 사업의 비율이 35.4%이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의 직접 목적 현황]

(단위: 개, %, 조원)

	사업 수		예산 규모	
		(비율)		(비율)
직접목적	89	(34.1)	9.1	(35.4)
간접목적	172	(65.9)	16.6	(64.6)
계	261	(100.0)	25.7	(100.0)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의 세부 구분 기준

직접목적 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⁸⁾에 포함된 사업 및 여타 재정사업 중 성평등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다. 직접목적 사업들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성평등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업 유형은 ① 여성대상사업 ② 여성을 사업수혜집단 중 하나로 명시한 사업 ③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근절·피해자 보호사업 ④ 자녀돌봄지원사업(각종 보육지원, 아동돌봄, 방과후 돌봄 등) ⑤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 육아기근로기간 단축제 등) ⑥ 인권 및 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⑦ 성평등 제도 운영사업 등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에는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⁹⁾ 사업 중 자체개선 사업,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이 포함된다.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에는 ①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 ② 기업 지원 사업 중 사업체 대표 성별에 따라 수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사업 ③ 가구 지원 사업 중 가구주 성별에 따라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사업 ④ 성별수혜 구분이 가능하지 않은 법정 의무지출사업으로서, 노후소득보장, 탈 빈곤, 각종 복지급여 제공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등이 있다.

8) 정부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정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이 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작성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2017년 12월에 확정 되었다.

9)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9년 성인지 예산서 직접/간접목적 사업 (예시)]

구분	사업명
직접목적 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다함께 돌봄 사업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간접목적 사업	SW전문인력역량강화(R&D)
	해외봉사단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창업성공패키지
	제도약지원자금(융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대상사업 수 조정

정부는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기존 대상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기에 검토한 분류 기준에 따라 성인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제외 및 사업 종료·통합 등 부가적인 요인으로 2019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은 전년에 비해 24.3%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이 편성된 중앙관서 수는 2018년 41개에서 2019년 33개로 8개 감소하였으며, 사업 수는 2018년 345개에서 2019년 261개로 84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 규모도 2018년 본예산 기준 33조 8,472억원에서 2019년 25조 6,283억원으로 24.3% 감소하였다.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개, 억원, %)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 감	
			(B-A)	(B-A)/A
중앙관서 수	41(41)	33	△8(△8)	△19.5(△19.5)
사업 수	345(345)	261	△84(△84)	△24.3(△24.3)
예 산	338,472(348,435)	256,283	△82,189(△92,152)	△24.3(△26.4)

주: ()는 2018년 추경포함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8.9.

다.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성과 목표 개선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의 배분구조를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성인지 대상사업의 대상자, 수혜자, 성과목표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개별부처가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양식을 개선하고 성과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안내하였다.

(1) 성과목표치 조정

「2019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성과목표¹⁰⁾를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성별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량화하여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7년 성인지결산 결과 성별 수혜격차가 10%p 이상 발생한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2019년 성인지예산안 작성 시 성과목표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10) 성과목표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업은 성별수혜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인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성과목표(지표)의 산출근거를 제시해야한다. 또한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업의 경우,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둘째, 2017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기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의 경우, 향후 개선사항 등 2017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셋째, 필요하다면 상기 이외의 성과목표(지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성과목표(지표) 산출근거 작성예시는 「2019년 성인지예산서 작성매뉴얼」 예시를 참조한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 사업은 2017년 성인지 결산 결과 성별 수혜격차가 10%p 이상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전체 182명 중 여성은 8명에 불과해 4.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2019년 여성 수혜비율 목표를 7.3%로 수정하였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보조)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새로운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 및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농업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2017년 성인지 결산 결과 사업수혜자 중 여성 수혜자가 전체 6,384명 중 1,569명에 그쳐 24.6%였다. 따라서 2019년 목표치는 30.0%로 변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은 농식품 벤처·창업에 대한 기술·자금·관로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창출 및 미래성장산업화 도모를 위한 것이다. 2017년 성인지 결산 결과 전체 사업수혜자 102명 중 여성수혜자가 26명에 불과해 25.5%였다. 따라서 2019년 목표치는 30.0%로 변경하였다.

[성별 수혜격차 10%p 이상 사업 성과 목표치 조정(예시)]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7년 여성수혜율 실적(%)	2019년 여성수혜율 목표(%)
국토 교통부	일반회계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	4.4	7.3
농촌 진흥청	일반회계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보조)	24.6	30.0
농림 축산 식품부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25.5	30.0
해양 수산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어업인교육훈련(제주)	23.1	37.0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체화

사업대상자는 개별 성인지 대상사업에 있어 잠재적인 정책대상으로 사업이 목표 하는 모집단이며, 사업수혜자는 실제 사업의 추진 결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가 불명확했던 사업을 구체화하였다.¹¹⁾

예를 들어 **교육부**의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고용노동부의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등은 2018년 성인지 예산서에 비해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혜자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없는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장비 및 시설을 지원 하는 것인데, 2018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나, 2019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분만취약지역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으로 명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경우 2018년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사업대상 및 사업수혜자를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 으로 하였으나, 2019년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성별 구분을 하였다.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체화(예시)]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2018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2019년 사업대상자/ 사업 수혜자
교육부	일반 회계	대학평가 및 운영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없음	신입 여성교원+ 주요 보직 여성교원+ 주요 위원회 여성교원
통일부	일반 회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없음	북한이탈주민입국자수
보건 복지부	일반 회계	분만취약지역 지원 사업	없음	분만의료기관 이용 대상자
문화체육 관광부	일반 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의 성별 구분 명시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란 실제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필요로 하는 (모)집단이며, 사업수혜자란 실제 사업의 추진결과로 혜택을 받는 집단(개인)이다.

1 성인지 대상사업 관련 개선방안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선정 기준을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으로 구분하고, 대상사업을 크게 감축시켰으며,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성과목표 설정을 합리화하는 등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 중 기존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가장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대상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의 기준을 명확히하여 성과 관리를 개선하고자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사업목적에 따라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이의 세부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 기준]

분류	대상
직접 목적 사업	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② 여타 재정사업 중 성평등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업 - 여성대상사업 - 여성을 사업수혜집단 중 하나로 명시한 사업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근절·피해자 보호사업 - 자녀돌봄지원사업(각종 보육지원, 아동돌봄, 방과후 돌봄 등) -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 인권 및 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 성평등 제도 운영사업
간접 목적 사업	①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자체개선 사업
	②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사업 ③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 - (기업 지원 사업) 사업체 대표 성별에 따라 수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사업 - (가구 지원 사업) 가구주 성별에 따라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사업 - (법정 의무지출사업) 노후소득보장, 탈 빈곤, 각종 복지급여 제공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자료: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작성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대상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와의 연동 등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간접목적사업 범위 검토 필요

성인지 대상사업 중 직접목적 사업은 정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는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여타 재정사업 중 성평등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간접목적 사업은 대상사업으로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 까지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을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사업수혜자의 성별 구분 가능 여부가 해당 사업의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 타당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 사업은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현재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간접목적 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 사업의 수혜자는 성별에 대한 고려보다는 지원자의 객관적 역량에 대한 고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하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즉,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기 어려우며, 특정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²⁾

양성평등개선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사업에 포함될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 기준, 특히 ‘간접목적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다만,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 사업은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 중 검토결과 개선 의견을 통보받은 사업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여성농업인 양성을 통해 영농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및 여성 영농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성별영향평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나. 사업 분류를 성과 관리와 연동할 필요

정부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사업 분류와 성과 관리의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과 관리를 위해 사업별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성인지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판단하고 있는데, 성인지 대상사업의 분류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도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목적 사업은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직접목적 사업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지표는 사업의 고유한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간접목적 사업은 간접적으로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의 본래 목적은 부처의 성평등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 따라서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성과지표를 해당 사업의 고유한 성과 목표가 아닌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별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사업 분류 별 성과지표 설정 방식 비교]

분류	부처 성평등 목표와의 관계	성과지표 설정 방식
직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	사업의 고유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
간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결산 등을 통해 제시된 성과목표 등 사업의 성평등 개선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설정

자료: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바탕으로 제작성

그러나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 결과 직접/간접목적사업으로 분류 방식이 개선되었음에도, 성과지표 설정이 이와 연동하여 개선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후 보호, 상담,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접목적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아동복지교사 여성비율’로 되어 있는데, 동 사업은 여성의 경제 진출 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성인지 대상 사업에 포함된 직접목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과지표에 사업 자체의 목표인 ‘지역 아동센터 돌봄 아동 수’ 등의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장애아동에게 돌봄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아 가족 구성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일·생활 균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직접목적사업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장애아가족양육 여성장애아동 수혜율’로, 사업의 고유 목표와는 관련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간접목적 사업이다. 따라서 성인지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의 본래 목표가 아닌,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사업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일부는 ‘초기집중교육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해당 지표를 통한 양성평등제고효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은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간접목적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는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향상률’이 설정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이 양성평등제고에 미치는 효과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관리의 기본이 되는 사안이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분류·선정 기준 변경이 성과지표 설정과 연동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사업 분류 개선 필요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에서 직접/간접목적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해당 분류의 검토가 적정한지에 대해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즉, 해당 사업이 직접 목적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간접목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경찰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사업은 지역주민을 통한 치안활동 홍보 및 치안현황 체험, 생활방법 요령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여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미 사업 목적 역시 치안현황 체험 및 생활방법 요령 교육이기 때문에 직접목적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여성재취업훈련은 신성장동력산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등 차세대 고부가 산업에 필요한 융합형 기술 인력 양성 공급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목표를 갖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간접목적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직접목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부의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은 대학생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내외 기숙사비가 저렴한 기숙사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직접 목적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여대생의 입사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성평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측면에서 간접목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

다만, 동 사업들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성평등 목표 및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의 포함 여부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들의 분류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직접·간접 목적 사업 분류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분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간접목적 사업 분류 개선 필요(예시)]

부처명	사업명 (직접/간접목적)	사업 내용	분석 의견
경찰청	지역사회 경찰활동 (직접목적)	지역주민을 통한 치안 활동 홍보 및 치안현황 체험, 생활방법요령 교육	사업대상이 여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 목적 역시 치안현황 체험 및 생활 방법 요령 교육이기 때문에 직접 목 적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고용 노동부	여성재취업 훈련 (간접목적)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 에 필요한 융합형 기술 인력 양성 공급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사업으로 분류되 어 있으므로 성별 수혜 분석을 참고하여 선정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직접목적)	대학생의 거주여건 개 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를 위해 대학내외 기숙 사비가 저렴한 기숙사 확충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여대생의 입사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성평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 (직접목적)	민간 스마트워크 지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 고 보급을 지원	스마트워크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양성평등제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토 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직접목적)	저상버스도입보조, 이동편의 실태조사,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BF인증 시범사업 등 시행	정책대상이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사업목적이 성평등에 1차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처명	사업명 (직접/간접목적)	사업 내용	분석 의견
해양 수산부	단체어업인 역량강화/어촌 개발리더 및 여성어업인 육성 (직접목적)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 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와 수산업 발전의 선도 적인 역할을 수행할 리더의 전문능력 강화 및 육성	정책대상이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사업목적이 수산전문 인력 양성 및 공동체 교육이기 때문에 직접목적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경우 전년에 비해 대상 부처 수가 41개에서 33개로 8개 감소하고, 사업 수도 345개에서 261개로 84개(24.3%)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포함하기 부적절한 사업이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검토 결과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ODA) 등 일부 사업들은 성인지 사업대상 선정 기준인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거나,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중 검토결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사업’임에 따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 방식 등을 살펴보았을 때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 의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	스마트워크 서비스 개발 및 보급지원, 스마트워크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	스마트워크 서비스개발 및 보급은 여성을 직접 수혜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움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해외봉사단)	개발도상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함으로써 현지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해외봉사활동을 경험을 사회에 환원	해외봉사단 선발은 지원자의 객관적 역량에만 근거하는 것으로, 선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움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 의견
법무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성폭력사범 단속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사범 단속 강화로 민생치안 확립	동 사업은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지 않고, 동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도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속한 가족 및 우리 사회 전반으로 볼 수 있음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법교육 연수 및 체험프로그램)	어린이, 청소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의식을 고양	연수 및 체험 교육의 대상은 전 국민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 중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
	법률구조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남·여 불문)에 대한 법률상담·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법률문제는 성별에 큰 영향 없이 발생하므로 정책대상자 성별 현황 파악이 어렵고, 법률구조 수혜자 성별 현황은 우연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정책이 성별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선도할 후계 농어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운영 비용을 지원	한국농수산대학교운영 사업의 수혜자의 선정은 지원자의 객관적 역량에만 근거하는 것으로, 선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지원자 및 선발자의 남녀 비율에서도 유의미한 성 불평등 실태를 도출하기 어려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제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 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법령(고시 포함) 제·개정시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직접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간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 의견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과 고객편의 시설 등 개선 지원	사업 수혜대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수혜자의 성비 또는 성별 격차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경찰청	수사경찰전문교육	수사형사 담당 경찰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	사업 대상자가 성별이 아닌 담당 업무에 의해 결정되며, 동 사업의 교육이 성평등 감수성이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2019년 성인지 예산서」는 성과목표를 합리화하여 개별 부처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 수행을 통한 성평등 제고 효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9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가 여전히 보수적으로 설정되거나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에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장애학생교육지원 사업은 신변처리, 교수학습보조 등 학교 생활 보조인력 지원, 중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통학비 등의 지원,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시설설비 확충 지원, 장애대학생들의 도우미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성인지 성과지표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만족도’라는 주관적인 지표로만 되어 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개선이 필요한 사업 현황]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수 (만명)	26.8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제고'라는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움
	장애학생 교육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만족도(점)	83.0	현재의 만족도 성과지표로는 사업 의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움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행복기숙사 여학생 입사비율(%)	63.4	성과목표치가 사업 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할 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중견연구	중견연구 신규과제의 여성지원 연구비 비율(%)	20.0	2018년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 율이 26.8%, 사업수혜자 중 여 성비율이 32.6%이나 2019년 성 과목표치를 20.0%로 설정하여 성과목표치 조정 필요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 력인재양성 (ODA) (해외봉사단)	봉사단 관리인력 중 여성귀국단원 비율(%)	50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동 사업 성평등 기대효과 중 하나인 개발도상국 현지 여성들의 역량개발과 관련한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KOICA 일반봉사단 여성참여비율(%)	50	
		신규과건 봉사단 성인지 교육 이수율(%)	100	
	글로벌연수 (ODA)	글로벌 연수 여성 연수생 참여율(%)	35.0	국별 연수과정은 여성 연수생 추천 할당제(30%)를 2010년부 터 적용하고 있어 성과지표로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 흡한 측면이 있음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법무부	직업훈련	직업훈련 여성수혜비율(%)	4.3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재설정 필요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참가자 만족도(점)	92.0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의 양성평등 개선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영화제작 지원 (영화제작지원 / 전문역량강화)	전문역량강화 여성수혜비율(%)	50.0	'19년 성과목표를 50%로 설정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을 목표로 여성의 수혜비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 사업 대상 자의 남녀 성비(2018년 기준 여 성 48%)를 고려하면 동 성과목 표는 다소 과도한 측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초기 집중교육 만족도(%)	97.0	현재 지표로는 동 사업이 남성과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수 등과 같은 지표로 대체 필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고객만족도(점)	88.5	동 사업들이 남성과 여성 북한 이탈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 리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사업에 참여한 여성 북한이탈주 민 수 등과 같은 지표로 대체 필요
보건 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 여성 참여자 비율(%)	61.3	성과목표인 '사업참여자 중 여성비율'을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음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지역아동 센터 지원 (아동복지 교사과건 지원)	아동복지교사 여성비율(%)	96.7	성과목표인 ‘아동복지교사 여성 비율’을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율 보다 과다하게 설정하여 양성평등 측면에서 부적절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가족양육 여성장애아동 수혜율(%)	40.0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35.1%) 보다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 (39.5%)이 높는데, 2019년 성과목표를 40% 수준으 로 상향하여 설정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음
고용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수혜자 여성비율(%)	60.0	사업대상자의 성별통계가 구축 되지 않아, 최근의 성비를 바탕 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성과목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함
	청년내일 채움공제	여성 가입 비율(%)	36.0	사업대상자인 청년 실업자의 성 비를 고려하지 않고 2019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2017년도 성과보다 저조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
여성 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가구 (가구)	65,000	현재의 성과지표는 예산편성 기준 대비 과소설정되어 상향조 정 필요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보급률(%)	28.9	사업수혜자를 교통약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수치로 조정할 필요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창업점포지원 수혜자 중 여성대표자 비율(%)	30.6	사업대상자의 성비 관련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성과목표가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가 어려움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경찰청	경찰인재개발	여성경찰관의 교육참여 비율(%)	15.2	2019년 성과목표는 전체 경찰관 대비 여성경찰관의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동 사업을 통해 남성경찰관의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역차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제작됨

다.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정확한 성별수혜분석을 위해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작성양식을 개선하였다. 정부는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 이들의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금연상담전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통계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전체 남녀 인구로 하고, 사업수혜자는 해당 연도별로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한 남녀 이용자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취지가 흡연률 감소에 있고 금연상담전화 이용자 대부분이 흡연자임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자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예시)]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분석 의견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ODA) (해외봉사단)	해외봉사단 파견 대상 개발도상국 현지 여성들을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에 추가할 필요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전화)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아닌 ‘흡연자’로 변경할 필요
고용노동부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동 사업이 인문계열 재학생 위주로 전면 개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인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에 인문계열 재적학생수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	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대상자를 20세 미만의 고등학교 진학가능 인구를 포함할 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수혜자를 교통약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로 조정할 필요
농림축산 식품부	취약농가인력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산출할 필요
	취약농가인력지원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수혜자 보다 적은 수를 사업대상자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산출 근거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대상자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인 ‘관련 전공대학(원)생 등의 수’로 설정할 필요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사업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농촌진흥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를 2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를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으로 분리할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제작됨

III

주요 부처별 분석

1

교육부

가. 현황

교육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확산이며 하위 목표는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이다. 둘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이다. 하위 목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이다. 셋째,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이다. 하위 목표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이다.

2019년도 교육부 성인지 대상 세부사업은 6개로, 일반회계 5개와 기금 1개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816억 5,7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80억 7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1,996억 6,400만원이다.

[교육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일반회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21,000	직접
		장애학생교육지원	10,416	간접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3,896	간접
		대학평가 및 운영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93	직접
		인문사회 기초연구(R&D)		
		- 학문후속세대지원	36,252	간접
소계(5개 세부사업)			81,657	
기금	사학진흥기금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학진흥기금)(용자)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118,007	직접
소계(1개 세부사업)			118,007	
합계(6개 세부사업)			199,66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11개에 비해 5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1,846억 800만원 대비 150억 5,600만원(8.1%)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10	72,988	5	81,657	△5	8,669(11.8)
기금	1	111,620	1	118,007	-	6,387(5.7)
합계	11	184,608	6	199,664	△5	15,056(8.1)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교육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대학평가 및 운영의 내역사업인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평가 등 3개 사업이며, 일반회계 210억 9,300만원, 사학진흥기금 1,180억 700만원 등 총 1,391억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장애학생교육지원 등 3개 사업이고, 일반회계 605억 6,4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2	21,093	3	60,564
기금	1	118,007	-	-
계	3	139,100	3	60,56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학교 내 돌봄공간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직접목적사업으로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 중 자녀돌봄지원사업(각종 보육지원, 아동돌봄, 방과후 돌봄 등)에 해당한다. 즉,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의 2019년 성인지 성과지표가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제고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즉,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가 증가하면 여성의 양육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제고에 기여했는지는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구 이용률’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¹⁾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수(만명)	26.8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제고’라는 객 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동 사업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신규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었으므로, 향후 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표 추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교육부는 장애학생교육지원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동 사업은 신변처리, 교수학습보조 등 학교생활 보조인력 지원,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통학비 등의 지원,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시설설비 확충 지원, 장애대학생들의 도우미 지원 등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동 사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 장애학생의 균형적인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성평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는 기대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교육지원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성과지표가 주관적인 만족도로만 되어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 사업들의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남녀 장애학생의 균형적인 교육지원 강화라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장애학생교육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만족도(점)	83.0	- 현재의 만족도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는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생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내외 기숙사비가 저렴한 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동 사업에 대해 행복기숙사 입사생 중 남녀 대학생의 입사 비율을 배분하여 남녀 평등을 실현한다는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성별에 따른 거주여건 차이의 해소라는 성평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가 ‘행복기숙사 여학생 입사비율’로 설정되어 있는데, 성과목표치가 사업 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할 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사업대상자 여성비율은 2018년 41.0%이지만, 교육부는 2019년 여성지원 비율 목표치를 이보다 22.4%p 높은 63.4%로 설정하였다.²⁾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2016년	2017년	2018년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사학진흥기금 용자)	전체	2,782,021명	2,728,340명	2,614,999명
	여성(비율)	1,131,082명(40.7%)	1,118,175명(41.0%)	1,072,546명(41.0%)
	남성(비율)	1,650,939명(59.3%)	1,610,165명(59.0%)	1,542,453명(59.0%)

주: 통계출처는 교육개발원 통계연보(고등교육기관 개황) /국공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학생 수(2018년 사업 대상자는 현재 조사 중이므로 '15년~'17년 데이터를 반영하여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설정)
자료: 교육부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의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17년 실적	'18년 추정치	'19년 목표치
행복기숙사 여학생 입사비율(%)	63.1	63.3	63.4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동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복기숙사 여학생 입사비율 성과지표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행복기숙사지원사업	행복기숙사 여학생 입사비율(%)	63.4	- 성과목표치가 사업 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할 때 과다하게 설 정되어 있음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여학생의 경우 치안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기숙사 거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학생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R&D 사업 참여의 성별 격차 완화이다. 둘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이며, 하위 목표는 과학기술분야 여성 경력개발과 여성 대표성 제고이다.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인지 대상 세부사업은 12개로, 일반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의 6개와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483억 3,5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62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2,245억 3,500만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일반회계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 중견연구(R&D)	121,338	간접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R&D)		
		-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운영	713	간접
		ICT기반 공공서비스촉진(정보화)		
		- 스마트워크활성화기반조성	630	직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13,447	직접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	11,927	직접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손익계정)		
- 과학교실운영	280	간접		
소계(6개 세부사업)			148,335	
기금	정보통신 진흥기금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R&D)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R&D, 정보화))		
		-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	31,400	직접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788-4666)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차세대보안리더)	3,910	간접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2,000	간접
		SW전문인력역량강화(R&D)	29,753	간접
방송통신 발전기금		ICT 창의기업 육성		
		- 벤처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990	간접
		-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강화	1,000	간접
과학기술 진흥기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5,147	직접
소계(6개 세부사업)			76,200	
합계(12개 세부사업)			224,535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16개에 비해 4개가 감소한 것이며, 사업규모도 2018년도 6,801억 9,900만원 대비 4,556억 6,400만원 (66.9%)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9	605,025	6	148,335	△3	△456,690(△24.5)
기금	7	75,174	6	76,200	△1	1,026(1.3)
합계	16	680,199	12	224,535	△4	△455,664(△66.9)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ICT기반 공공서비스촉진(정보화)의 내역사업인 스마트워크활성화기

반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일반회계 260억 400만원, 기금 365억 4,700만원 등 총 625억 5,1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 R&D)의 내역사업인 중견연구(R&D) 사업 등 7개 사업이며, 일반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23억 3,100만원, 기금 396억원 5,300만원으로 총 1,619억 8,4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3	26,004	3	122,331
기금	2	36,547	4	39,653
계	5	62,551	7	161,98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스마트워크활성화기반조성 사업은 민간 기업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CT기반의 민간 스마트워크 지원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9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900만원 감소한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5개 스마트워크 지원서비스 모델을 개발·보급하며,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기업경영진 대상 교육, 홍보 및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으로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재택 근무 또는 고정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스마트워크활성화기반조성 사업을 성인지 직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은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교육 및 홍보 중심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을 직접 지원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동 사업에서는 민간 기업의 스마트워크 작업장 구축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모델 개발, 홍보 등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인지 직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또한 스마트워크 작업장 구축반적인 사업 수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수 없고, 사업 대상자의 남녀 비율에서도 유의미한 성 불평등 실태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 의견
스마트워크활성화 기반조성	스마트워크 서비스개발 및 보급지원, 스마트워크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	- 스마트워크 서비스개발 및 보급은 여성을 직접 수혜대 상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수 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측면 을 고려하기 어려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견연구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중견연구자 지원은 대학의 이공분야 교원이나 국·공립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간 연간 3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2019년 예산안은 1,213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중견연구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중견연구 신규과제의 여성지원 연구비 비율’이며, 성과목표는 2019년에 20.0%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중견연구 사업의 지원 대상인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은 2018년 26.8%이다. 그리고 2018년 실제 사업수혜자 중 여성 비율은 32.6%이다.

동 사업은 2019년 성과목표를 2018년 31.1%보다 낮은 20.0%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사업수혜자나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중이 성과목표치 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중견연구	중견연구 신규과제의 여성지원 연구비 비율(%)	20.0	- 2018년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율이 26.8%,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이 32.6%이나 2019년 성과목표치를 20.0%로 설정하여 성과목표치 조정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외교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이며 하위 목표는 우수한 여성인력 활용 및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이다. 둘째, 성인지적 관점의 공적개발원조(ODA) 이행이다. 하위 목표는 사회적 권리의 성평등한 배분을 위한 사업지원이다.

2019년도 외교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8개로, 일반회계 8개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1,853억 6,800만원이다.

[외교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네팔(ODA)		
	-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740	간접
	- 네팔 무구지역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1,481	직접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ODA)		
	- 동티모르 아이나로주 모성보건 서비스 개선사업	877	직접
	가나(ODA)		
	- 가나 UNICEF 여성청소년 권익과 교육 및 보건증진사업(가나UNICEF 사회변혁을 위한 여성청소년권익과교육및보건증진)	3,263	직접
	에티오피아(ODA)		
	-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	1,700	직접
	모잠비크(ODA)		
	- 모잠비크UNICEF 잠베지아주 초등교육 환경 개선 및 보건인식개선(모잠비크잠베지아주초등학교 환경개선및교육역량강화사업)	678	간접
	세네갈(ODA)		
	-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437	직접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 해외봉사단	121,326	간접	
글로벌연수(ODA)			
- 글로벌연수	52,866	간접	
합계(8개 세부사업)		185,368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12개에 비해 4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1,787억 900만원 대비 97억 9,700만원(5.4%)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교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10	177,140	8	185,368	△2	8,228(4.6)
기금	2	1,569	-	-	△2	△1,569(△100)
합계	12	178,709	8	185,368	△4	9,797(5.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외교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네팔(ODA)의 내역사업인 네팔 무구지역 모자보건환경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77억 5,800만원이다.

간접목적 사업은 네팔(ODA)의 내역사업인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1,776억 1,0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5	7,758	3	177,610
기금	-	-	-	-
계	5	7,758	3	177,610

주: 하나의 세부사업에 직접목적인 내역사업과 간접목적인 내역사업이 혼재해 있는 경우, 사업 수 산정 시 해당 세부사업은 직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내역사업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봉사단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함으로써 현지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해외봉사활동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채용과정에서 여성비율을 특정 수준으로 할당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봉사단은 성별과 무관하게 지원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으로 결정되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봉사단 선정은 1차(서류전형), 2차(면접)로 진행하는데 이는 지원자의 객관적인 역량에만 근거하는 것으로, 선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기 어렵다. 즉, 선정 과정에서 특정 성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2016~2018년도 해외봉사단 선발 현황을 보면 전체 선발인원 중 50% 이상이 여성으로, ‘해외봉사단 활동을 통한 청년여성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이라는 성평등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¹⁾

[해외봉사단 선발 현황(2016~2018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4,768명	5,263명	4,608명
여성(비율)	2,530명(53.1%)	3,016명(57.3%)	2,447명(53.1%)
남성(비율)	2,238명(46.9%)	2,247명(42.7%)	2,161명(46.9%)

주: 2016년, 2017년 실적은 WFK 봉사단 ‘실 파견 인원’, 2018년은 ‘파견목표 인원’ 기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따라서 해외봉사단 지원 및 선발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 절차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수 없다는 점,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가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 KOICA는 국제개발협력분야가 여성인력의 진출 비율이 높은 분야 중 하나로, 통상적인 국제개발협력분야 기관의 인력 성비를 고려할 때 현재 해외봉사단의 여성비율이 해당 분야 인력시장의 공급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 의견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해외봉사단)	개발도상국에 해외봉사단 을 파견함으로써 현지주민 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해 외봉사활동 경험을 사회에 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봉사단 선발은 지원자의 객관적 역량에만 근거하는 것으로, 선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가 달성되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할 필요성 부족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해외봉사단 사업의 경우 정책대상이 해외봉사단원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현지 주민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농촌개발 등 다양한 파견분야에 대한 지식 및 경험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 여성들의 역량개발 지원’을 성평등 기대효과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봉사단 관리인력 중 여성귀국단원 비율’, ‘KOICA 일반봉사단 여성참여비율’, ‘신규파견 봉사단 성인지 교육 이수율’로만 설정되어 있어 개발도상국 현지 여성들의 역량개발과 관련한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연수(ODA) 사업은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구원, 기술인력 등을 국내로 초청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내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여성의 국제협력 확대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는 ‘글로벌연수 여성연수생 참여율’을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별 연수과정은 2010년부터 여성 연수생 추천 할당제(30%)를 적용하고 있어 동 성과목표는 성과지표로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2018년부터 성과목표인 ‘글로벌연수 여성연수생 참여율’ 목표치를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측정·제시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해외봉사단)	봉사단 관리인력 중 여성귀국단원 비율(%)	50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개발도상국 현지 여성 들의 역량개발과 관련 한 성과 측정이 불가능 한 측면이 있음
	KOICA 일반봉사단 여성참여비율(%)	50	
	신규파견 봉사단 성인지 교육 이수율(%)	100	
글로벌연수(ODA)	글로벌 연수 여성 연수생 참여율(%)	35.0	- 국별 연수과정은 여성 연수생 추천 할당제 (30%)를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어 성과지 표로서 유의미한 정보 를 제공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 부적정

해외봉사단 사업의 경우 정책대상이 해외봉사단원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현지 주민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농촌개발 등 다양한 파견분야에 대한 지식 및 경험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 여성들의 역량개발 지원’을 성평등 기대효과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는 ‘해외봉사단 파견인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봉사단 파견 대상 개발도상국 현지 여성들 또한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분석 의견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ODA)(해외봉사단)	- 해외봉사단 파견 대상 개발도상국 현지 여성들 또한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로 선정할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통일부의 성평등 목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이다. 하위 목표는 ①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및 정착 지원, ②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 ③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이다.

2019년도 통일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5개이며,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486억 6,400만원이다.

[통일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운영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6,522	간접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3,840	간접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 취업장려금 지급	7,439	간접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 기초직업적응 훈련	721	간접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142	간접		
		합계(5개 세부사업)	48,66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6개에 비해 1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432억 8,000만원 대비 53억 8,400만원(12.4%) 증가한 것이다.

이영미 예산분석관(ymlce@assembly.go.kr, 788-4640)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교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6	43,280	5	48,664	△1	5,384(12.4)
기금	-	-	-	-	-	-
합계	6	43,280	5	48,664	△1	5,384(12.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통일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없고 간접목적 사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	-	5	48,664
기금	-	-	-	-
계	-	-	5	48,66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의 내역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국내 입국 후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사회 초기정착 및 적응을 지원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자립·자활, 교육·연구, 국민인식 개선 등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가 각각 ‘초기 집중교육 만족도’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고객만족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성과지표가 주관적인 만족도로만 되어 있고 성인지적 관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즉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우며, 동 사업들이 남성과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동 사업들의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하나센터와 남북하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 사업을 통해 취업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수나 각종 교육 및 상담에 참여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성인지 목표 달성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초기 집중교육 만족도(%)	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움 - 동 사업들이 남성과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음 - 동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수 등과 같은 지표로 대체 필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고객만족도(점)	8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움 - 동 사업들이 남성과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음 - 동 사업에 참여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수 등과 같은 지표로 대체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법무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폭력피해 지원 및 인권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이다. 둘째,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이다. 하위 목표는 성폭력 처벌 강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이다. 2019년도 법무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13개로, 일반회계 및 교도작업특별회계 10개와 기금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1,155억 6,1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374억 6,8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1,530억 2,900만원이다.

[법무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일반회계	법률구조	54,942	간접
		법무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143	직접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성범죄 등 4대악 사범단속)		
		- 성폭력사범 단속 지원	2,510	직접
		교정교화	7,675	간접
		청소년비행예방	5,057	간접
		치료감호자수용관리	7,432	직접
		보호관찰활동	11,689	직접
		특정범죄관리	16,976	직접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 법교육 연수 및 체험프로그램	2,691	간접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1,020	간접	
	교도작업 특별회계	직업훈련	5,426	간접
소계(10개 세부사업)		115,561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874	직접	
	성폭력 피해자 지원	31,345	직접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5,249	직접	
소계(3개 세부사업)		37,468		
합계(13개 세부사업)		153,029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12개에 비해 1개가 증가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902억 2,200만원 대비 628억 700만원(69.6%)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교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9	58,386	10	115,561	1	57,175(97.9)
기금	3	31,836	3	37,468	-	5,632(17.6)
합계	12	90,222	13	153,029	1	62,807(69.6)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법무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법무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등 8개 사업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387억 5,0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74억 6,800만원 등 총 762억 1,8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의 내역사업인 법교육 연수 및 체험프로그램 등 5개 사업, 768억 1,1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5	38,750	5	76,811
기금	3	37,468	-	-
계	8	76,218	5	76,811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법무부의 성인지 사업 중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사업의 내역 사업인 성폭력사범 단속 지원 사업은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성폭력 사범 단속 지원 사업은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지 않고, 동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도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속한 가족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을 통한 성별 분석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다.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교육 연수 및 체험프로그램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는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성별로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성평등한 법문화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설정하고 있지만, 연수 및 체험 교육의 대상은 전 국민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 중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 또한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도(%)’로 설정되어 성별에 따른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법률구조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남·여 불문)에 대한 법률상담·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임금체불, 교통사고, 임대차 등 법률문제는 성별에 큰 영향 없이 발생하므로 정책대상자 성별 현황 파악이 어렵고, 법률구조 수혜자 성별 현황은 우연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정책이 성별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법률구조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구조의 필요성과 수요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비교적 남녀 수혜 구분의 필요성이 적거나 양성평등을 고려할 여지가 적은 사업이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기 부적절하다.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 의견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성폭력사범 단속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사범 단속 강화로 민생치안 확립	- 동 사업은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지 않고, 동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도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속한 가족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친다고 볼 수 있음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법교육 연수 및 체험프로그램)	어린이, 청소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의식을 고양	- 연수 및 체험 교육의 대상은 전국민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 중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
법률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남·여 불문)에 대한 법률상담·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 법률문제는 성별에 큰 영향 없이 발생하므로 정책대상자 성별 현황 파악이 어렵고, 법률구조 수혜자 성별 현황은 우연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정책이 성별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직업훈련 사업은 수형자들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가르쳐 출소 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 만약 여성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 수형자 위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만 갖추고 있다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는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 수행자들은 소액의 작업장려금(월 1~2만원)을 받는 직업훈련보다 고액의 작업장려금(월 20~40만원)을 받는 교도작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인 ‘직업훈련 여성수혜비율(%)’은 수행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므로 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여성 수행자가 소수이며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직업훈련 과정 편성 및 교도작업·직업훈련 동시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목표 재설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성평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남녀 수행자가 선호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해당 프로그램 이수 시 출소 후 구직으로 연결되는 관련성이 높은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직업훈련	직업훈련 여성수혜비율(%)	4.3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재설정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양성 평등한 문화가치 확산 및 문화환경 조성이다. 하위 목표는 문화활동 활성화 및 잠재적 문화인력을 양성하여 양성평등 문화가치 확산 및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이다. 둘째, 문화분야의 양성 평등한 정책으로 여성 복지 및 일자리 확대 추진이다. 하위 목표는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및 문화분야 내 여성의 대표성 제고이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12개로, 일반회계 6개와 기금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1,372억 6,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418억 3,8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1,791억 600만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일반회계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콘텐츠산업분야 창작 지원	1,200	간접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2,000	간접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184	간접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 인생나눔교실 운영	3,300	간접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		
		-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160	간접
		- 무지개다리 사업	2,200	간접
		- 남북문화 상호이해 제고	295	간접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620	직접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31,319	간접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5,990	간접		
소계(6개 세부사업)		137,268		

김월래 예산분석관(dewywine@assembly.go.kr, 788-4635)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1,504	간접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 장애인선수 육성지원(국가대표 훈련지원) (장애인국제체육지원(국가대표훈련지원))	10,527	간접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5,930	간접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 관광안내인력 교육(관광전문인력 양성)	97	간접
		-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	53	간접
	영화 발전기금	영화제작 지원(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영화제작지원/전문역량강화 (차세대 영화기술 인력양성)	600	간접
		영화정책지원		
		-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및 현장영화인 인력양성	3,127	간접
	소계(6개 세부사업)			41,838
합계(12개 세부사업)			179,106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21개에 비해 9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3,387억 5,700만원 대비 1,596억 5,100만원(51.7%)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13	194,094	6	137,268	△7	△56,826(△29.2)
기금	8	144,663	6	41,838	△2	△102,825(△71.0)
합계	21	338,757	12	179,106	△9	△159,651(△51.7)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문화체육관광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일반회계의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사업 1개 사업이며 예산안은 6억 2,0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콘텐츠산업 생태계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콘텐츠 산업 분야 창작 지원 등 11개 사업이며, 일반회계 1,366억 4,800만원, 기금 418억 3,800만원 등 1,784억 8,6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	620	5	136,648
기금	-	-	6	41,838
계	1	620	11	178,486

주: 하나의 세부사업에 직접목적인 내역사업과 간접목적인 내역사업이 혼재해 있는 경우, 사업 수 산정 시 해당 세부사업은 직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내역사업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및 현장영화인인력양성 사업(「영화정책지원」의 내역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사업은 영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984년 설립한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영화 연출, 촬영, 애니메이션, 영화제작연구 등 4개 전공과정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사업이고, 현장영화인인력양성사업은 영화현장에서 종사하는 영화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영화제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대상자는 영화제작·지원 및 유통업 종사자, 디지털온라인 유통업 종사자로서, 영화진흥위원회의 2015년~2016년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 및 한국영화투자수익성 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는데, 2018년 대상자는 총 28,974명으로, 여성은 13,845명(47.8%), 남성은 15,129명(52.2%)이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및 현장영화인인력양성 사업의 대상자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및 현장영화인인력양성	전체	29,496명	30,100명	28,974명
	여성(비율)	14,424명(48.9%)	14,827명(49.3%)	13,845명(47.8%)
	남성(비율)	15,072명(51.1%)	15,273명(50.7%)	15,129명(52.2%)

주: (통계출처) 교육대상자 인원/ '16년, '17년은 집행기준, '18년은 추정치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한편 동 사업의 수혜자 현황을 보면, 2016년은 전체 1,436명 중 여성이 719명(50.1%), 남성이 717명(49.9%)이고, 2017년은 1,318명 중 여성이 511명(38.8%), 남성이 807명(61.2%)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은 전체 1,143명 중 여성이 417명(36.5%), 남성이 726명(63.5%)으로 매년 여성 수혜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및 현장영화인인력양성 사업의 수혜자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및 현장영화인인력양성	전체	1,436명	1,318명	1,143명
	여성(비율)	719명(50.1%)	511명(38.8%)	417명(36.5%)
	남성(비율)	717명(49.9%)	807명(61.2%)	726명(63.5%)

주: 1. (통계출처) 2015년-2016년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 및 한국영화투자수익성분석(영화진흥위원회)
2. (사업대상집단) 영화제작/지원 및 유통업 종사자(영화 기획 및 제작, 영화수입, 영화제작지원, 영화배급, 극장상영, 영화홍보 및 마케팅 종사자), 디지털온라인 유통업 종사자(DVD, 블루레이제작 및 유통업, 온라인 상영업 종사자)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상 성과목표를 여성영화인의 교육수혜비율로 정하고, 2017년 대비 11.2%p 상승한 50%로 설정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을 목표로 여성의 수혜비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 사업 대상자의 남녀 성비(2018년 기준 남성 52% : 여성 48%)를 고려하면 동 성과목표는 다소 과다해 보인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및 현장영화인인력양성 사업의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17년 실적	'18년 추정치	'19년 목표치
여성영화인의 교육수혜비율(%)	38.8	36.5	50.0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따라서 점진적으로 동 사업 수혜자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
되, 그 성과목표의 기준은 사업 대상자의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양
성평등을 추구하는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보다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영화정책지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및 현장영화인 인력양성)	여성영화인의 교육수혜비율(%)	50.0	- '19년 성과목표를 50%로 설정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을 목표 로 여성의 수혜비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 사업 대상 자의 남녀 성비(2018년 기준 남 성 52% : 여성 48%)를 고려하 면 동 성과목표는 다소 과다해 보임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의 내역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다양성법」²⁾ 제1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1)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업의 성과목표가 42.0%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상 성과목표는 50.0%이다.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
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보호와 증진교육, 제14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4개교 운영과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가 ‘문화다양성 교육 참가자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주관적 만족도를 성인지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우며, 교육 대상자를 분리 평가하고 있지 않아 성인지적으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의 효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참가자 만족도(점)	92.0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움 - 동 사업이 남성과 여성을 분리 하여 평가할 수 없음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이며 하위 목표는 ①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통한 농촌공동체의 여성참여 활성화, ② 여성농업인의 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이다. 둘째,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다. 하위 목표는 ① 소득기반 확대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강화, ②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및 직업역량 강화이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11개로,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9개와 기금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3,503억 8,300만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90억 8,9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3,594억 7,200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40,577	간접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기계임대	42,000	간접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농업농촌교육훈련	40,355	간접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9,480	간접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 귀농귀촌 교육	4,769	간접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02,050	간접
		취약농가인력지원		
- 영농도우미 지원	8,330	간접		
- 행복나눔이 지원	1,617	간접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업기반정비(제주)			
	- 농업경영컨설팅		100	간접
	- 농업농촌교육훈련		335	간접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		770	간접
소계(9개 세부사업)			350,383	
기 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전통발효식품육성		
		- 전통발효식품육성	6,800	간접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2,289	간접
소계(2개 세부사업)			9,089	
합계(11개 세부사업)			359,472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 대상사업 수 19개에 비해 8개가 감소한 것이며, 사업비 규모는 2018년 3,669억 3,700만원 대비 91억 2,500만원(2.4%)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17	358,678	9	350,383	△8	△8,295(△2.3)
기금	2	8,259	2	9,089	-	830(10.0)
합계	19	366,937	11	359,472	△8	△9,125(△2.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없으며, 간접목적 사업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	-	9	350,383
기금	-	-	2	9,089
계	-	-	11	359,472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 사업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후계농어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농어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여 농어촌 여성의 취·창업 역량의 강화를 강화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 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성별과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대상자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입시지원자로, 사업수혜자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업대상자의 고등학교 교과 성적과 면접 등에 의하여 사업수혜자가 선발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사업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기 어렵다. 2018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의 20.4%가 285명이 여성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특정 성별을 우대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농수산대학의 지원 및 선발 등의 절차는 지원자의 교과 성적 및 면접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수행 절차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수 없고,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남녀 비율에서도 유의미한 성 불평등 실태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 의견
한국농수산 대학교운영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선도할 후계농어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운영비용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수산대학교운영 사업의 수혜자의 선정은 지원자의 객관적 역량에만 근거하는 것으로, 선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움 - 한국농수산대학교 지원자 및 선발자의 남녀 비율에서도 유의미한 성 불평등 실태를 도출하기 어려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제작됨

(2)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 부적절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은 취약가구 및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업인 등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취약가구와 경로당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농도우미 사업은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자, ③ 영농교육참여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행복나눔이 사업은 ① 농촌거주 65세 이상 가구, ②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③ 다문화 가정, ④ 조손 가구, ⑤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가사 활동 등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대상자란 실제 수혜자가 아닌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영농도우미 사업은 기준 사업수혜자(2017년 15,844세대, 2018년 15,000세대)와 유사한 17,000세대를 2019년 사업대상자로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수치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행복나눔이 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자(2017년 14,440세대, 2018년 14,500세대) 보다 적은 14,000세대를 2019년 사업대상자로 제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성별수혜분석이란, 사업대상자의 비율과 비교해서 수혜자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농도우미 사업과 행복나눔이 사업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행복나눔이 사업은 사업수혜자 보다 적은 수를 사업대상자로 제시하고 있어 성별수혜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두 사업은 사업대상자 비율과 비교해서 수혜자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의 산출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분석 의견
취약농가인력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 사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산출할 필요
취약농가인력지원 (행복나눔이 지원)	- 사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산출할 필요 - 사업수혜자 보다 적은 수를 사업대상자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산출 근거 마련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의 성평등 목표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사업참여와 성별형평성 증대이다.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6개로, 일반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개와 기금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234억 4,4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24억 4,3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458억 8,700만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일반회계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3,073	간접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 창조혁신형디자인고급인력양성	7,356	간접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 바이오인력양성	1,637	간접
	-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1,020	간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인력양성(에특)(R&D)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0,358	간접		
소계(4개 세부사업)			23,444	
기금	전력산업 기반기금	에너지인력양성(전력기금)(R&D)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20,654	간접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		
-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R&D)	1,789	직접		
소계(2개 세부사업)			22,443	
합계(6개 세부사업)			45,887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8개에 비해 2개가 감소한 것이며, 사업 규모는 2018년도 1,326억 2,000만원 대비 874억 9,700만원(65.9%)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6	110,559	4	23,444	△2	△87,115(△78.7)
기금	2	22,061	2	22,443	-	382(1.7)
합계	8	132,620	6	45,887	△2	△87,497(△65.9)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기반구축(R&D) 사업 1개 사업으로, 총 17억 8,9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사업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의 내역사업인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총 440억 9,8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	-	4	23,444
기금	1	1,789	1	20,654
계	1	1,789	5	44,098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1) 적극적인 성과관리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 귀 및 미취업 신진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진출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연구개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당초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지원 수혜자 수, 기술현장 체험참여 여학생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5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조치 의견에 따라 경력복귀 교육수료자의 취업률, 신진여성연구인력 취업지원 고용유지율 등을 2019년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첫해년도 경력복귀 교육수료자의 취업률 목표를 14%로 설정하였다. 서비스 분야 일자리 매칭 비중이 높은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취업률 50% 이상)에 비해 연구개발인력의 취업난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나 교육에 참여한 여성들의 재취업 의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산업기술혁신 기반구축 (산업현장여성R&D 인력참여확산 기반구축)	경력복귀교육 수료자의 취업률(%)	14	- 타기관 사업을 통한 경력단절여 성의 취업률, 교육 참여자의 높 은 재취업의지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성과관리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보건복지부의 성평등 목표는 총 다섯 가지이다. 첫째, 일·가정 양립지원이며, 하위 목표는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둘째, 고용격차 해소이다. 하위 목표는 다양한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이다. 셋째, 다양한 부문의 여성참여 확대이다. 하위목표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통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이다. 넷째, 건강과 복지 증진이다. 하위목표는 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② 노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③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④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성인지 대상 세부사업은 30개로,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개와 기금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7조 6,912억 7,9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925억 3,7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7조 7,838억 1,6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자활사업		
		- 자활근로사업	389,709	간접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4,906	직접
		장애인활동지원	968,477	간접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82,670	직접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7,186	직접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1,637	직접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1,122	직접		
		장애인일자리지원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김동한 예산분석관(vivace@assembly.go.kr, 788-4633)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 일반형(전일제) 일자리(일반형 일자리지원)	63,643	간접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9,665	간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97	간접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946	간접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6,354	간접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05,591	간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21,932	간접
	다함께 돌봄 사업	13,788	직접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	132,610	간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	6,925	직접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2,100	간접
	영유아보육료 지원	3,405,282	직접
	시간제보육 지원	11,006	직접
	어린이집 확충		
	- 어린이집 확충	68,560	직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905	직접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9,329	직접
	공공형어린이집	62,915	직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보육서비스지원/시간연장형교사	61,429	직접
	- 보육서비스지원/대체교사	36,326	직접
	- 보육서비스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8,808	직접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87,913	직접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 여성건강기반기술개발연구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1,620	직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조)(생활))	276,828	간접
소계(25개 세부사업)		7,691,279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기 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 인공임신중절예방	682	직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6,940	간접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상담전화	2,025	간접	
	응급의료기금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0,995	간접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1,895	직접	
소계(5개 세부사업)			92,537	
합계(30개 세부사업)			7,783,816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39개에 비해 9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16조 4,417억 1,900만원 대비 8조 6,579억 300만원(52.6%)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35	16,385,323	25	7,691,279	△10	△8,694,044 (△53.0)
기금	4	56,396	5	92,537	1	36,141(64.0)
합계	39	16,441,719	30	7,783,816	△9	△8,657,903 (△52.6)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보건복지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이며, 회계 4조 9,023억 2,700만원, 기금 125억 7,700만원 등 총 4조 9,149억 4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자활사업의 내역사업인 자활근로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회계 2조 7,889억 5,200만원, 기금 799억 6,000만원이다. 이는 총 2조 8,689억 1,2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8	4,902,327	7	2,788,952
기금	2	12,577	3	79,960
계	20	4,914,904	10	2,868,912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하는 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목표를 자활근로 여성참여자 비율 61.3%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54.2%이므로 여성참여비율을 61.2%로 설정하는 것은 사업대상자의 남녀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성과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 여성 참여자 비율(%)	61.3	- 성과목표인 ‘사업참여자 중 여성비율을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 보다 과다하게 설정하여 양성평등 측면에서 부적절함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보호, 상담, 학습지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목표를 아동복지교사 여성비율 96.7%로 정하고 있다.

한편, 동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이 96.5%라는 점에서 성과목표를 96.7%로 설정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성과목표 설정 시 부처의 성평등 목표인 ‘여성참여 확대 등 고용격차 해소’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하나, 성과목표 설정 시에는 부처의 성평등 목표 뿐 아니라 사업대상자의 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성과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아동복지교사 여성비율(%)	96.7	- 성과목표인 ‘아동복지교사 여성비율’을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 보다 과다하게 설정하여 양성평등 측면에서 부적절함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장애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부모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목표를 장애아가족양육 여성장애아동 수혜율 40.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도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35.1%)보다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39.5%)이 높게 나타나는 사업의 2019년 성과목표를 40% 수준으로 상향하여 설정하는 것은, 남성차별이 우려되는 등 양성평등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목표를 사업대상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가족양육 여성장애아동 수혜율(%)	40.0	-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35.1%)보다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39.5%)이 높게 나타나는 사업의 2019년 성과 목표를 40% 수준으로 상향하여 설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세부사업명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 개선) 사업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성과목표를 장애인학대 판정건수(월평균)(건)로 하고 있으나 성별수혜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이므로 성인지 성과목표로 부적절하다. 이러한 부적절한 지표를 선정한 이유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에 대한 통계 미구축으로 성별수혜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남녀비율 자료를 산출하여 성인지 성과목표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분석 의견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 개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 성인지 성과목표를 장애인학대 판정건수(월평균)(건)로 하고 있으나 성별수혜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불 가능한 지표이므로 부적절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 부적정

금연상담전화(세부사업명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을 위한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및 흡연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흡연률 감소를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및 사망 감소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통계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전체 남녀 인구조로 하고, 사업수혜자는 해당연도별로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한 남녀 이용자로 설정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므로, 성별수혜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상담전화 사업이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정보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조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성별수혜분석은 사업대상자 비율과 비교해서 수혜자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사업대상자는 사업수혜자의 모집단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¹⁾ 또한, 동 사업의 취지가 흡연률 감소에 있고, 성과목표가 ‘금연상담전화 여성 등록비율’이고, 금연상담전화 이용자 대부분이 흡연자임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자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조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아닌 ‘흡연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분석 의견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전화)	-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아닌 ‘흡연자’로 변경할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사업대상자를 실제 수혜자가 아닌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현황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목표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며, 이의 하위 목표로 ①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②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③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및 고용평등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36개로,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7개와 기금 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2조 7,192억 2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3조 4,916억 7,7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6조 2,108억 7,9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직업안정기관운영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2,355	간접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768	간접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412,227	간접
		사회적기업진흥운영		
		- 사회적기업가 육성	34,658	간접
		청년내일채움공제	596,288	간접
		인문특화청년취업 아카데미	22,121	간접
		해외취업지원	57,102	간접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6,041	간접
		실업자능력개발지원		
		- 실업자능력개발지원	94,946	간접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	7,745	간접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한기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기 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한기대))	15,676	간접	
		취약계층취업촉진	9,083	간접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356,231	간접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875	직접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107	직접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240	직접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생활)	81,292	간접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	1,159	간접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288	간접	
	소계(17개 세부사업)		2,719,202		
	고 용 보 험 기 금	고용보험기금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113,503	간접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22,032	간접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40,305	간접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4,311	간접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11,300	간접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14,661	간접	
전직실업자등능력 개발지원					
-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221,580	간접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76,043	간접	
근로자능력개발지원			95,323	간접	
일학습병행운영지원			84,598	간접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 다기능기술자			24,014	간접	
- 전문기술과정			29,805	간접	
- 여성재취업훈련			3,213	간접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유자)			31,735	간접	
조기재취업수당			210,168	간접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111,659	직접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18,871	직접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 정규직전환지원	18,141	간접
		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49,829	직접
		모성보호육아지원	1,455,276	직접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취업지원	16,876	간접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13,761	간접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장애인훈련기관지원	7,289	간접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156	간접
		근로자건강보호		
		- 근로자건강센터	14,778	간접
	근로복지 진흥기금	근로자복지지원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1,450	간접	
소계(19개 세부사업)			3,491,677	
합계(36개 세부사업)			6,210,879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38개에 비해 2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5조 2,985억 3,800만원 대비 9,123억 4,100만원 (17.2%)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14	1,823,090	17	2,719,202	3	896,112(49.2)
기금	24	3,475,448	19	3,491,677	△5	16,229(0.5)
합계	38	5,298,538	36	6,210,879	△2	912,341(17.2)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고용노동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적극적고용환경개선조치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며, 회계 12억 2,200만원, 고용보험기금 1조 6,356억 3,500만원 등 총 1조 6,368억 5,7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직업안정기관운영의 내역사업인 취업지원 및 취업지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29개 사업이며, 회계 2조 7,179억 8,000만원, 기금 1조 8,560억 4,200만원 등 총 4조 5,740억 2,2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3	1,222	14	2,717,980
기금	4	1,635,635	15	1,856,042
계	7	1,636,857	29	4,574,022

주: 하나의 세부사업에 직접목적인 내역사업과 간접목적인 내역사업이 혼재해 있는 경우, 사업 수 산정 시 해당 세부사업은 직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내역사업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1단계)→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2단계)→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수혜자 여성비율(%)이며, 2017년도 실적은 60.1%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성과목표를 60.0%로 설정하였다. 이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최근 3년간 여성 비율이 60% 내외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성과목표는 사업대상자의 성별 비율이나 사업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최근의 실적만을 성과목표의 근거로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대상자의 성별 비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실적인 60%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인지 판단이 어려우며, 내년도 목표치인 60.0%의 적정성 또한 검토가 어렵다. 따라서 동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성별 통계로 구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대상자는 경제·고용 상황 및 지역별 고용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성별 통계도 구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대상자의 성별 통계가 구축되지 못할 경우 성인지 사업의 합리적인 성과 목표 설정이 어려우므로, 성과목표 설정 방식 개선이 불가할 경우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할 시 정부와 기업에서 이에 비례하는 금액을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여성 가입 비율이며, 2019년 성과목표는 36.0%이다. 이는 2017년도 여성 가입 비율 37.6%와 기존 청년인턴제도의 2016년 실적(34.2%)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업대상자인 청년 실업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43.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청년내일채움공제 성과목표인 여성 가입 비율 36.0%는 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할 때 낮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 또한, 2019년도 성과목표가 2016년 청년인턴제 성비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나, 청년인턴제도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2017년 동 사업의 실적인 37.6%보다 낮은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대상자의 성비 및 2017년도 성과를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실업자의 성비에 비해 동 사업 여성 참여자

비율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에 여성 청년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수혜자 여성비율(%)	60.0	- 사업대상자의 성별통계가 구축되지 않아, 최근의 성비를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함 - 이에 따라 성과목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함
청년내일 채움공제	여성 가입 비율(%)	36.0	- 사업대상자인 청년 실업자의 성비를 고려하지 않고 2019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함 - 2017년도 성과보다 저조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 부적절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초 동 사업은 계열과 무관히 운영되었으나, 2015년 하반기 인문계열을 위주로 하는 인문계특화과정이 시범 도입 되고, 2017년부터 동 사업을 인문계특화과정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동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인문계특화과정으로 전면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를 인문계열 재적학생수가 아닌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성과목표 설정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여학생 수혜비율로, 2019년도 성과목표를 55.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율인 43.6%와 차이가 있다.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대상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대상자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	전체	3,516,616명	3,437,309명	3,437,309명
	여성(비율)	1,522,473명(43.3%)	1,500,027명(43.6%)	1,500,027명(43.6%)
	남성(비율)	1,994,143명(56.7%)	1,937,282명(56.4%)	1,937,282명(56.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성과목표 설정 시 사업대상자의 성별 비율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도 성과목표와 사업대상자 성비 간에 10%p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대상자 설정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인문계열 재학생 수로 변경하는 등 사업의 성과관리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분석 의견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 동 사업이 인문계열 재학생 위주로 전면 개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에서 인문계열 재적학생수로 변경할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이며, 하위 목표는 ① 양성평등정책의 총괄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 ②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도모 ③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여성분야에서의 위상제고이다. 둘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 강화이다. 하위 목표는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이다. 셋째, 여성폭력 근절이다. 하위목표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33개로, 일반회계 21개와 기금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3,370억 6,0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4,207억 7,6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7,578억 3,600만원이다.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309	직접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5,170	직접
		국제개발협력(ODA)	1,017	직접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653	직접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 e새일시스템 구축 및 운영	737	직접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456	직접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3,730	직접
		양성평등문화확산(성평등문화확산)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 양성평등주간	106	직접	
	- 공모사업 단체지원 및 대외협력 강화	397	직접	
	여성사전시관	753	직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7,835	직접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56,471	직접	
	미래 여성인재 양성	1,207	직접	
	취약·위기가족지원			
	- 취약·위기가족지원	3,877	직접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1,351	직접	
	아이돌봄지원	224,592	직접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3,886	직접	
	- 가족친화지원사업	1,164	직접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2,781	직접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1,662	직접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7,441	직접	
	청소년 건강지원	6,764	직접	
	청소년활동 지원	3,701	간접	
소계(21개 세부사업)		337,060		
기 금	청소년 육성기금	이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할		
		-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417	직접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1,036	직접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22,402	간접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 해소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2,063	간접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10,626	간접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8,992	간접
		- 내일이룸학교(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3,459	간접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6,933	직접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4,674	간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8,212	간접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85,058	직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904	직접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1,477	직접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0,615	직접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4,908	직접
소계(12개 세부사업)		420,776	
합계(33개 세부사업)		757,836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39개에 비해 6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6,004억 9,700만원 대비 1,573억 3,900만원(26.2%)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25	330,596	21	337,060	△4	6,464(1.9)
기금	14	269,901	12	420,776	△2	150,875(55.9)
합계	39	600,497	33	757,836	△6	157,339(26.2)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사업의 내역사업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업 등 30개 사업이며, 일반회계 3,333억 5,900만원, 기금 3,503억 4,800만원 등 총 6,837억 700만원으로 여성가족부 성인지 대상사업 예산안의 90.2%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의 내역사업인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이며, 일반회계 37억 100만원, 기금 704억 2,800만원 등 총 741억 2,9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22	333,359	1	3,701
기금	8	350,348	7	70,428
계	30	683,707	8	74,129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등 가정 아동 대상 가정 내 양육수요 충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가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점)'에서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가구)'로 변경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수의 증가는 서비스 대기가구 해소 등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과 연계되므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성인지 성과지표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2019년 성과목표를 지난 3년간 이용가구 추세를 반영하여 65,000가구로 하였으나, 2019년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90,000가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신규 성과목표 가구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가구 (가구)	65,000	- 현재의 성과지표는 예산편성 기준 대비 과소설정되어 상향조정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국토교통부의 성평등 목표는 국토·교통분야 여성인력 진출의 적극적 조치이며, 하위 목표는 국토·교통분야 여성인력 양성이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12개로, 일반회계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와 기금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5,335억 9,4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조 3,267억 7,7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2조 8,603억 7,1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철도핵심인력양성	1,101	간접
	- 철도핵심인력양성	2,814	간접
	항공전문인력양성		
	물류산업지원	1,070	간접
	-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해외인프라시장개척	2,708	간접
	-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1,800	간접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 공간정보 석박사양성	268	간접
	교통시설 특별회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7,27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	478,354	간접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	8,200	간접
소계(9개 세부사업)		533,594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788-4623)

하상우 예산분석관(upright@assembly.go.kr, 788-4651)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기 금	주택도시기금	국민임대(용자)	896,400	간접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354,700	직접
		전세임대경상보조	75,677	간접
소계(3개 세부사업)			2,326,777	
합계(12개 세부사업)			2,860,371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15개에 비해 3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2조 8,930억 1,600만원 대비 326억 4,300만원 (1.1%)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12	1,480,624	9	533,594	△3	△947,030(△63.9)
기금	3	1,412,392	3	2,326,777	-	914,385(64.7)
합계	15	2,893,016	12	2,860,371	△3	△32,643(△1.1)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국토교통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등 2개 사업이며, 회계 372억 7,900만원, 주택도시기금 1조 3,547억원 등 총 1조 3,919억 7,9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철도핵심인력양성의 내역사업인 철도핵심인력양성 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회계 4,963억 1,500만원, 기금 9,720억 7,700만원 등 총 1조 4,683억 9,2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	37,279	8	496,315
기금	1	1,354,700	2	972,077
계	2	1,391,979	10	1,468,392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각각 4,783억 5,400만원, 82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동 사업은 특정 사업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동 사업은 모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서, 동 특별회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별도 운영하고 있어 동일 내용의 사업인 경우에도 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각각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제주)의 경우 지역자율계정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지역)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해당 사업은 누락되고 일부 사업만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수혜자의 범위가 불특정 지역주민 전체라는 점에서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상 대상사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의 동일내용 사업을 함께 포함시켜 대상사업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 의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제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생 활기반 확충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 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 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보조, 이동편의 실태조사,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BF인 증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저상버스 보급률(%)로 설정하고 있는데,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체 시내버스 대수 대비 저상버스 대수로 측정을 하게 된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이나, 성별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므로 양성평등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성과지표를 양성평등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수정하여 성인지 목표 달성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보급률(%)	28.9%	- 저상버스보급률은 양성평등효 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성 인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수정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 부적정

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은 항공인력 저변확대로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항공분야 취업 확대를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항공조종인력 양성, 항공기초인력(항공특성화고) 양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조종인력양성 사업은 항공기 조종에 관심이 있고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 기준 및 지침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기초인력양성 사업은 항공정비·기계·전자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항공특성화고 고교생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령별 및 성별 인구현황(20세~39세)을 바탕으로 사업대상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총 1,373만 7,210명(여성 659만 3,654명, 남성 714만 3,556명)이 사업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업대상자는 잠재적인 정책대상으로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이므로 항공기초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20세 미만의 고등학교 진학가능 인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보조, 이동편의 실태조사,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BF인증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는 총 인구수로 측정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는 잠재적인 정책대상으로서 사업 목표의 모집단이므로 총인구수로 산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수혜자는 교통약자라는 점에서 총 인구수로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업수혜자를 교통약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분석 의견
항공전문인력양성	- 사업대상자를 20세 미만의 고등학교 진학가능 인구를 포함할 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사업수혜자를 교통약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로 조정할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해양수산부의 성평등 목표는 해양수산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대표성 제고이다. 하위 목표는 인력 육성에 따른 참여 확대 및 수산분야 활성화 지원이다.

2019년도 해양수산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8개로, 일반회계 3개 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183억 4,000만원이다.

[해양수산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1,000	간접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R&D)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496	간접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1,833	간접
		자율관리어업육성	10,200	간접
		어촌6차산업화지원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800	간접
		귀어귀촌활성화	3,819	간접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단체어업인 역량강화/어촌개발리더 및 여성 어업인 육성(어촌개발리더 및 여성어업인 육성)	181	직접	
	어업인교육훈련(제주)	11	간접	
합계(8개 세부사업)		18,340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13개에 비해 5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777억 6,700만원 대비 594억 2,700만원(76.4%)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교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13	77,767	8	18,340	△5	△59,427(△76.4)
기금	-	-	-	-	-	-
합계	13	77,767	8	18,340	△5	△59,427(△76.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해양수산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의 내역사업인 단체어업인 역량강화/어촌개발리더 및 여성어업인육성 사업 1개 사업 1억 8,1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내역사업인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등 7개 사업 181억 5,9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	181	7	18,159
기금	-	-	-	-
계	1	181	7	18,159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 부적절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해운·항만 물류분야 종사자 및 관련 전공대학(원)생, 선박금융 관련 해운금융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제공하여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사업수혜자(동 사업에 의한 교육 및 실습 등에 참여한 인원)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사업수혜자 중 여성의 비율이 최근연도 소폭 증가(2016년 38.7% → 2017년 36.6% → 2018년 41.0%)하고 있어 해양수산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해양수산부의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같은 비율이 전체 사업대상자의 인원 및 성비에 비추어 양성평등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¹⁾ 역시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임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전공대학원(원)생 등 사업의 기초가 되는 모집단의 규모 및 성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를 설정함으로써 성인지 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분석 의견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 지원	- 사업대상자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인 ‘해운·항만 물류분야 종사자, 관련 전공대학원(원)생 등의 수’로 설정할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 2018. 5.

가.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이며, 하위 목표는 ① 여성 취·창업 및 사회경제 분야 진출 지원 ② 여성 기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이다. 둘째,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으로, 하위 목표는 여성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이다.

2019년도 중소기업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24개로,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7개와 기금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31억 7,6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5조 2,992억 1,3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6조 3,023억 8,9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105,485	간접
		공정·품질기술개발(R&D)	44,383	간접
		창업성장기술개발(R&D)		
		- 창업기업과제	236,252	간접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0,650	간접
		여성기업육성	7,111	직접
		장애인기업육성	7,752	간접
		중소기업컨설팅	6,342	간접
		마케팅지원사업	17,547	간접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2,513	직접
		창업사업화지원	294,955	간접
		벤처기업경쟁력강화		
		- 벤처기업일자리지원	1,480	간접

한성진 예산분석관(hsjin@assembly.go.kr, 788-4630)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양성			
		-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양성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33,856	간접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연구인력지(R&D))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신진석박사연구인력채용지원)	15,060	간접	
		산학연협력기술개발(R&D)	42,614	간접	
		지역특화산업육성(R&D)	46,497	간접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균특, 지역자율)(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물류 기반 조성(지특, 생활기반))	121,737	간접	
		창업인프라지원 - 창업보육센터지원, BI경쟁력 강화지원 (리모델링)	8,942	간접	
	소계(17개 세부사업)			1,003,176	
	기 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880,000	간접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1,781	간접	
창업기금자금(융자)			2,130,000	간접	
창업성공패키지			97,222	간접	
제도약지원자금(융자)			230,000	간접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창업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0,210	간접	
		소상공인지원(융자)	1,950,000	간접	
소계(7개 세부사업)			5,299,213		
합계(24개 세부사업)			6,302,389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27개에 비해 3개가 감소한 것이며, 사업 규모는 2018년도 6조 509억 8,800만원 대비 2,514억 100만원 (4.1%)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18	867,790	17	1,003,176	△1	135,386(15.6)
기금	9	5,183,198	7	5,299,213	△2	116,015(2.2)
합계	27	6,050,988	24	6,302,389	△3	251,401(4.1)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여성기업육성 등 2개 사업, 총 96억 2,4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R&D)의 내역사업인 창업기업과제 사업 등 22개 사업 총 6조 2,927억 6,5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2	9,624	15	993,552
기금	-	-	7	5,299,213
계	2	9,624	22	6,292,765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고시 포함) 제·개정시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옴부즈만실 운영을 통해 기존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성인지 대상사업 중 직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규제 발굴 및 검토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여 남성 중심적 구조에서 인지하지 못한 여성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지원단의 여성전문위원 구성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직접목적 사업의 정의(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¹⁾ 사업 수행의 결과(여성전문위원 채용)가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발굴 및 검토시 여성기업인의 애로사항 해소)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간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과 고객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고, 시설현대화 시장의 고객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유시설이나 여성휴게실, 여성전용주차장 등 여성배려시설도 확충하고 있어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의 사업 수혜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수혜자의 성비 또는 성별 격차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을 성인지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직접목적 사업은 여성대상사업, 여성을 사업수혜집단 중 하나로 명시한 사업,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근절·피해자 보호사업, 자녀돌봄지원사업,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인권 및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성평등 제도 운영 사업 등이다.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 의견
중소기업규제 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법령(고시 포함) 제·개정시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직접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 으므로, 간접목적 사업으로 분 류하는 것이 바람직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과 고객편의시설 등 개선 지원	- 사업 수혜대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수혜자의 성비 또는 성별 격차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을 파악하기 어려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제작됨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
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성과지표를 창업점포지원 수혜자 중 여성대표자 비율로 설정하고,
최근 3개년도 창업점포지원 사업의 여성대표자 수혜율(2015년~2017년: 22%,
34.3%, 27.9%) 평균치 28.1%에 2.5%p를 더한 30.6%를 2019년 성과목표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에서 사업대상자를 장애인기업체의 전체 종사자로만 정하고 있
고, 장애인 점포대표자 중 여성비율 등 사업대상자의 성비 관련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성과목표가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
생한다. 따라서 장애인 점포대표자의 성별 비율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
과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장애인기업육성	창업점포지원 수혜자 중 여성대표자 비율(%)	30.6	- 사업대상자의 성비 관련 통계 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성과목 표가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 었는지 검토가 어려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제작됨

가. 현황

경찰청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폭력 근절이며, 하위 목표는 여성 및 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이다. 둘째,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다. 하위 목표는 경찰인력의 여성 대표성 강화이다.

2019년도 경찰청 성인지 대상사업은 7개로, 일반회계 7개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919억 5,000만원이다.

[경찰청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 지역사회경찰활동(시민경찰학교운영)	183	직접
		여성청소년보호활동		
		- 소년범죄조사전문가참여제	1,352	직접
		성폭력예방지원및여성청소년범죄수사		
		-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성폭력피해자 전문가참여제)	698	직접
		아동안전지킴이	51,824	직접
		경찰인재개발	6,036	간접
		신입순경교육	29,346	직접
		수사경찰전문교육	2,511	직접
		합계(7개 세부사업)	91,950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4개에 비해 3개가 증가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438억 8,300만원 대비 480억 6,700만원(109.5%)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교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4	43,883	7	91,950	3	48,067(109.5)
기금	-	-	-	-	-	-
합계	4	43,883	7	91,950	3	48,067(109.5)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경찰청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신입순경교육 등 6개 사업, 859억 1,4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경찰인재개발 사업 1개, 60억 3,6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6	85,914	1	6,036
기금	-	-	-	-
계	6	85,914	1	6,036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수사경찰전문교육 사업은 수사형사 담당 경찰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동 사업의 교육을 통해 수사 및 형사 담당 경찰의 성평등 감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경찰수사연수원은 직무에 관한 전문교육이므로, 사업 대상자가 성별이 아닌 담당 업무에 의해 결정되며, 동 사업의 교육이 성평등 감수성이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경찰전문교육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분석 의견
수사경찰전문교육	수사형사 담당 경찰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 사업 대상자가 성별이 아닌 담당 업무에 의해 결정되며, 동 사업의 교육이 성평등 감수성이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부적절

경찰인재개발 사업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과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에 여성경찰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 경찰관의 역량강화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당해연도 전체교육 이수 인원 중 여성경찰관의 교육이수 인원을 교육지표로 산정하였다.

* 교육지표 산출식
 = (당해년도 여성경찰관 교육이수인원÷당해년도 전체교육 이수인원)×100

경찰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1%(2018년 8월말 기준)이다. 그런데 2017년에 동 사업을 통한 여성 경찰관의 교육 참여 비율은 13.9%이며, 2019년 참여 비율 목표는 15.2%로 하고 있다. 이는 전체 경찰관 대비 여성경찰관의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동 사업을 통해 남성경찰관의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역차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19년 경찰인재개발 사업 성과목표]

(단위: %)

성과목표(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여성경찰관의 교육참여 비율	13.9	14.5	15.2

따라서 경찰청은 양성평등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경찰인재개발	여성경찰관의 교육참여 비율(%)	15.2	- '19년 성과목표는 15.2%로 하고 있다. 이는 전체 경찰관 대비 여성경찰관의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동 사업을 통해 남성경찰관의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역차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농촌진흥청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이며, 하위 목표는 ① 농어촌 여성의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전문성 함양 ② 여성 농업인 창업 사업장 경영개선 등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이다. 둘째, 여성건강증진이며, 하위 목표는 ①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② 여성농업인 농작업 시스템 개선이다.

2019년도 농촌진흥청 성인지 대상사업은 7개로,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 7개, 총 202억 1,400만원이다.

[농촌진흥청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19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 해외농업글로벌인재양성	1,806	간접
		농가경영개선지원(보조)	8,171	간접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 농업인대학 운영	1,890	간접
		-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2,474	간접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작업재해예방(보조)	2,198	간접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2,675	간접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 지역지원)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보조, 경제))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800	간접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제주)				
	-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200	간접	
합계(7개 세부사업)			20,21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18년도 대상사업 수 8개에 비해 1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18년도 218억 2,000만원 대비 13억 3,600만원(7.4%)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18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안)		비교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8	21,820	7	20,214	△1	△1,336(△7.4)
기금	-	-	-	-	-	-
합계	8	21,820	7	20,214	△1	△1,336(△7.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농촌진흥청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간접목적 사업으로 7개 사업이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	-	7	20,214
기금	-	-	-	-
계	-	-	7	20,214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19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18.9.

나. 분석 의견

(1)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 부적절

농촌진흥청은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동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서 실용화 하고, 새로운 기술을 확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 농업인 등 농업 분야 종사자 및 종사희망자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공무원이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향상과 함께 농촌진흥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 사업 추진 결과 2017년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사업의 교육인원은 총 6,384명이며, 이 중 농촌진흥공무원의 직무교육이 3,504명으로 가장 많고, 농업기계·스마트팜 관련 교육 2,173명, 농업인 등에 대한 실용교육이 707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사업의 수혜자 중 절반 이상이 농촌진흥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를 '20세 이상 농업인 수'로 일괄 설정하고 있다. 사업수혜자도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의 수혜자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동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우므로, 사업대상자를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으로 분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란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자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분석 의견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 실제 사업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농촌진흥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를 2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를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으로 분리 필요

자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 필

총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동한 김려진 김성은
김월래 남희신봉진
이영미 오은선 윤성식
윤여문 정주완 조가영
하상우 한성진 황준연

지원 | 이가현 행정실무원
정재도 자료분석지원요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발간일 2018년 10월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137-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